#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Ⅰ 제안경위

# 1. 박상구 의원 발의안

가. 제 출 자 : 박상구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615호

다. 제출일자 : 2019. 4. 1.

라. 회부일자 : 2019. 4. 3.

# 2. 추승우 의원 발의안

가. 제 출 자 : 추승우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871호

다. 제출일자 : 2019. 8. 7.

라. 회부일자 : 2019. 8. 13.

# 3.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이병도 의원 외 13명

나. 의안번호 : 제888호

다. 제출일자 : 2019. 8. 7.

라. 회부일자 : 2019. 8. 13.

# 11. 제안사유

#### 1. 박상구 의원 발의안

-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에서 구청 장이 지정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하여 담장허물기사업, 일반건 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만 지 원되고 있음
- 이에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한 20면 이하 소규모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차난을 일부 해결하도록 도모하고 자 함
- 또한 「주차장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노상 및 노 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 2. 추승우 의원 발의안

○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 발생의 국내 주요 요인을 차지하는 자동차 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자동차 운행수요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시 교통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 차장 요금의 차등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안

-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 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 현행 조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80%, 5·18 민주유공자와 경차 등의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50%, 전통시장 이용자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 30%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두고 있지만, 상이자 또는 고엽제환자, 부상자인 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비장애인 국가유공자 특히 이동이 불편한 고령의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아무런 해택이 없는 상태임
-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1. 박상구 의원 발의안

- 가. 시장이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하여 20면 이하의 소규모 노외주차 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나.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 2. 추승우 의원 발의안

가.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지역여건 외에 계절 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비고 제4호)

## 3.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안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 관한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상이자 또는 고엽제환자, 부상자인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인)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의 8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 Ⅳ. 참고사항

# 1. 박상구 의원 발의안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2019. 4. 8 ~ 15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수정가결
  - ▶ 서울시는 주택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市 투자심사 결과 적정 사업에 한하여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시·구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 · 총사업비 60억이상(시비 40억원), 자치구별 시비 차등지원(30%~70%)
  - ► 노후주택 매입 후 소규모 노외주차장(20면이하) 건설비용까지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경우 모든 노외주차 장 건설비용 지원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주차장 건설 사업을 빌미로 주택매입 사업으로 변질 될 수 있음
  - ▶ 따라서, '19년부터 "비강남지역 주택가 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해 주차환경개선지구·도시재생지역에 市투자심사 없이 소규모주차장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이 市투자사업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아래 지역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하고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지역 소규모 주차장 건설은 자치구 예산(교통사업특별회계)으로 건설함이 타당함
    - 1,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
    - 2. 도시재생사업 지역(재건축·재개발 지역 제외)
    - 3. 전통시장 주변 100m 이내 지역
  - ►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주차장 법 제10조의2 및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 개정안은 법규

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여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

▶ 아울러, 노외주차장관리자의 미상주의 경우 책임을 면하고, 무료인 주차장의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 없이 시민이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법 위반소지 있음

## 2. 추승우 의원 발의안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2019. 8. 19 ~ 26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원안 가결

# 3.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각: 2019. 8. 19 ~ 26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보류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교통약자 지원이라는 주차정책에 의거 국가 유공자 중에서도 상이자를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 하고 있으나
    - •서울시 보훈대상자(본인) 132천명 중 27천명만 감면혜택 받고 있음
  - ▶ 상이자가 아닌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할인 할 경우 교통약자 지원이라는 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 발 생 우려
    - •미혜택 공로자 본인(67천 명)외 유족(38천 명)도 감면요구 가능
    - •독립유공자(본인)과 유족 요금 80%감면시 •연간 13백만원 세수감소 예상
    - •미혜택 유공자 및 유족을 모두 감면시 •연간 12억원 세수감소 예상
  -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이 소수이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감면 할 경우, 향후 주차장 관리와 부합하도록 감면대상자 차량을 등 록받아 차량기반의 주차요금 감면방안 검토는 가능할 것임

# Ⅴ.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1. 박상구 의원 발의안

#### 가.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20면 이하의 소규모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주차 장 관리자의 책임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 소규모 주차장 설치 지원 관련(안 제4조의2 관련)

○ 서울시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60억원 이 상(시비 40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해 시 투자심사를 거쳐 투자 적정으로 결정된 사업에 한해 자치구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시·구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 참고 : 주차장 건설사업 시 투자심사대상 및 시·구 매칭비율 규정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 1. **시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 2. 자치구의 이전재원 포함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조례 제9조에 따라 적용되는 **자치구의 차등보조율 범위**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3조 관련)					
적 용 기 준					
재정력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 또한, 최근 수립한 "2019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을1) 통해 서로 인접한 20억원 이상의 주차장 건설 사업들을 묶어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주차환경개선지구2) 및 도시재생지역의3) 소규모 부지에 주차면수 10면 내외를 설치할 경우 시 투자심사를 제외하고 시·구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 기준을 다소 완화한 상황임
- 동 개정조례안은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한 20면 이하 소규모 노외 주차장 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주차 장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차난이 심 각한 지역의 주차장 공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한 곳에 건설된 대규모 주차장에 비해 여러 곳에 설치된 소규모 주차장이 이용자 접 근성과 이용 편의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소규모 주차장 사업 대상에 대한 기준 및 건설시 예산 지원에 대한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주차장 사업이 적정하게

<sup>1) 2019</sup>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 주차계획과-2024(2019,2,18.)

<sup>2)</sup>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수급율 70% 미만) : 71개소

<sup>3)</sup> 도시재생지역 : 104개소(활성화지역 27개소, 주거환경개선지구 77개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 주차장 관리자 책임 관련(안 제9조의2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및 주의의무를 신설하는 것이고, 「주차장법」제10조의2 및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다 할 것이나.

안 제9조의2제2항의 단서 조항 중 이용요금이 무료인 주차장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 상 근거가 없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 참고 : 「주차장법」관련 규정

-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u>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u>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u>노상주차장관리자는</u>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u>주</u>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u>노상주차장관리자가</u>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2. 추승우 의원 발의안

#### 가.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공영주 차장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계절적 요인 및 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도 주차요금 50% 조정 사유에 포함코자 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에 대한 주차요금은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 ※ 참고 : 「주차장법」관련 규정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u>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u>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u>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u>특별시장</u>·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이 <u>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u>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 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서울시는 이에 따라 동 조례 [별표 1]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개 급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 4〉에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 「주차장법」[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원, 1구획당)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 정 기 권		1회주차시	월 정 기 권		
	5분당		주 간	야 간	5분당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_	_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_	_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_	_	150	100,000	40,000	
1.77	4급지 100	2,000	50,000	_	100	환승목적주차시 40,000	20,000	
4급시						기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조정 범위에 "계절적 요인 및 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지역여건에 더하여 계절적 요인 및 자동차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한 주차요금 조정을 통해 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한 교통수요 관리를 함 으로써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서울시가 2013년 초미세먼지 경보제<sup>4)</sup> 시행 이후 주의보 및 경보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

<sup>4)</sup> 발령기준

<sup>►</sup> 주의보 : 미세먼지(PM-2.5)가 시간당 평균  $75\mu g/m^s$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 보 : 미세먼지(PM-2.5)가 시간당 평균  $150\mu g/m^s$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적인 방안과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할 경우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 안전을 위해 특별대책 마련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참고: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PM -2.5	주의보 횟수 (일수)	1 (1)	6 (13)	6 (8)	-	5 (10)	8 (18)	9 (19)
	경보 횟수 (일수)	_	_	-	-	_	_	2 (4)

○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역여건ㆍ계절 적요인ㆍ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 안에서 주 차요금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주차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단순히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으로 비취지지 않도록 공청회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충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되, 민간위탁계약 중인 주차장은 해당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토록 하는 것임

#### ※ 참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제4조(<u>적용 대상자</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u> 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2. <u>애국지사</u>: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 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나.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의 경우 동 조례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80% 감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또 는 유족에게도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5) 서울의 경우 1,990명(유공자 본인 11명, 유가족 1,979명)으로6) 주차요금 감면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서울시 주차정책, 사회적 분위기 및 다른 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7)

<sup>5) 「</su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의 발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sup>6)</sup> 전국적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총 7,854명임(유공자 본인 38명, 유족 7,816명)

<sup>7)</sup>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 결과 주차장 이용현황 파악이 어려워 주차수입 감소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주차장 수입 감소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먼저,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한 주차요금 80% 감면은 현행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고엽제피해자 및 의상자 등에 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올해 3·1운동 100주년 등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

#### ※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감면 규정 일부

-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 의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
  - 나. 「<u>국가유공자</u>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 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 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 된 사람
  -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u>의상자</u>로서 의상자 증을 제시한 경우
  -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 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u>보훈보</u> 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한편 유족에 대한 주차요금 80% 감면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 되고 역사적 사실들이 재평가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에 공헌한 유공 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유족의 수가 많지 않아 주차요금 수입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족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다만, 현행 조례의 주차요금 할인 규정은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이라 는 서울시 주차정책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본인이면서 동시에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고, 다른 보훈대상자의 유족도 감 면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서울시는 독립유공자(11명)에게는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 당을<sup>8)</sup>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배우자(2,909명)에 대해서는 '19년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8개 의료기관 진료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신하 공영시설 이용요금 도 감면하고 있는 상황임

#### ※ 참고 : 서울시 산하 공영시설 이용요금 감면현황(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공원입장료 미술관·박물관	세종문화회관 관 람 료	자연체험시설 (캠프장 등)	자유시민대학	체육시설
무료	50%↓	30%↓	무료(본인만)	50%↓(본인만)

<sup>8) 4·19</sup> 및 5·18유공자 등(485명), 저소득층 국가유공자(3,950명), 참전유공자(36,600명)에게는 월 10만원 수당 지급